

2023년 민주노총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접선거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 사무처장 직접선거

선거운동 안내서

선거운동기간

· 입후보 등록 마감일 24시부터 선거일 전일
▷ 10월 26일(목) 24:00 ~ 11월 20일(월) 24:00

선거운동이란?

1.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2.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입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3) 통상적인 조합 활동





선거운동안내서

선거운동기간 : 10월 26일(목) 24:00 ~ 11월 20일(월) 24:00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 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운동안내서 목차

2023 직선 선거운동원	03
2023 직선 후보자 개인홍보물	04
각급조직 노조간부 금지 및 의무사항	05
위반한 선거운동 신고와 조치	06
사례로 보는 선거운동	08
2020 민주노총3기직선 유권해석 모음	11
2017 민주노총2기직선 유권해석 모음	15

2023 직선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 전체 인원제한

●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선거운동원

- 전국 운동원 : 지역 이동 제한을 두지 않는 인원 각 후보조 별 30인 이내
- 광역시도 운동원 : 지역본부 관할 광역시도 내에서 활동할 각 후보조 별 30인 이내
(최대 30인×16곳=480명)

●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후보 선거운동원

- 각 후보조 별 30인 이내

선거운동원 이동제한 등

●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전국 운동원

- 전국 운동원 패찰(색깔로 구분)을 착용한 이는 지역 이동의 제한 없음

●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광역시도 운동원

- 광역시도 운동원 패찰(색깔로 구분)을 착용한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선거운동해야 하며 타 광역시도 관할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 해당지역의 지역본부장 후보 운동원 패찰(색깔로 구분)을 착용한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선거운동해야 하며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원의 유세·연설회 집결

● 단위사업장 방문 유세 및 선전전

-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운동원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후보 운동원 모두 각각 10인 이내 (후보자 제외)

● 합동유세 및 합동토론회

-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운동원은 40인 이내 (후보자 제외)
-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후보 운동원은 30인 이내 (후보자 제외)
-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지자들의 경우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지지자들은 선거 운동용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운동용 소품을 소지·사용할 수 없음.



후보자 개인홍보물

개인홍보물의 종류 인쇄물

- A3 이하 규격 인쇄물 - 2종 제한
 - 명함판 규격 인쇄물 - 3종 제한
 - 120mm x 60mm 이하
 - 전지 규격 인쇄물 - 2종 제한
- 4 × 6전지(788mm × 1091mm), B전지(765mm × 1085mm), 국전지 (636mm × 939mm), A전지(625mm × 880mm) 등 전지 규격
- 홍보용 차량 및 차량 부착 인쇄물 - 승합차종 3대
- ※ 인쇄물의 색도 및 수량 제한은 없음

개인홍보물의 종류 온라인

- 홈페이지 게시판, SNS, 기타 정보통신매체 선전물
 - 동영상 홍보물
 - 선거용 홈페이지, SNS 계정
- ※ 온라인 선전물 및 계정의 수량 등 제한 없음

개인홍보물의 종류 유의사항

- 위 개인홍보물 이외의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홍보물은 사용할 수 없음
- 개인홍보물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음
- 개인홍보물의 수량, 양식, 규격 등은 중앙선관위와 모든 후보자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음

2023 직선

각급조직 노조간부 금지 및 의무사항

|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조직(기구)의 의무 |

●아래와 같이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원활히 지원해야 함

- 후보자 누구라도 사업장 방문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에게 사전에 제공함
- 후보자 누구라도 개인홍보물 우편배송을 할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개인홍보물을 특정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함
- 후보자 누구라도 각 단위조직 및 그 산하조직(기구) 온라인 계정,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사전승인을 득한 개인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아니함
- 후보자 누구라도 각 단위조직 및 그 산하조직(기구) 사전보고 하에 각급 회의 및 회의 시 해당 연설을 하려 할 경우 이에 협조함

●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 ‘명의’ 의 아래 행위는 금지됨

-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기구) 명의로 개설된 소셜미디어(SNS)계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노조 기관지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기구)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조직(기구)의 ‘간부’ 가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됨

| 노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

●대상자

- 민주노총 중앙 및 지역본부 임원 · 각종 위원회의 대표(의장) 및 사무총국(처) 성원
- 산별노조(연맹) 중앙 임원 · 각종 위원회의 대표(의장) 및 중앙사무처 성원

●금지 행위

-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거나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 업무로 얻은 기회 또는 권한 등을 이용해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물과 개인홍보물, 각종 홈페이지나 기관지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본인 이름으로 지지 또는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위반한 선거운동 신고와 조치

| 선거운동 금지사항과 제재 |

● 금지사항

-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② 정부나 사용자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 후보자격 박탈, 당선무효
- ③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모바일메시지로 공표, 규율위 제소
- ④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격 박탈, 당선무효
- 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명예훼손 행위
- ⑥ 본 안내서에 담긴 금지 및 의무사항 위반 행위
-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 ① 개인홍보물 배포·게시 등의 중단 명령
- ② 특정 후보자와 위반 행위자에 각각에 대한, 또는 동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
- ③ 특정 후보자의 자격 박탈 또는 (사후) 당선 무효
 - 공표방법 : 각급 선관위 및 단위조직 홈페이지, 사업장게시판 등 게시 해당 후보자 선거홈페이지 첫 화면 게시 등
 - 위 공표 시간이 부족할 경우와 금지사항 ②, ③, ④ 위반의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선거인(전체 또는 특정지역 또는 해당투표구)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이를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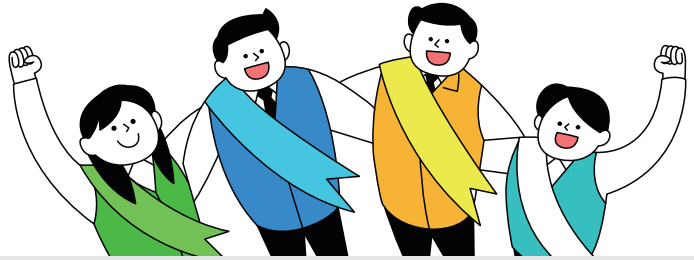
| 위반한 선거운동 신고와 조치 |

● 신고

위반한 선거운동 신고는 후보자와 조합원 누구라도 할 수 있음
단위조직 선관위, 산별노조(연맹) 선관위, 지역본부 선관위 등에 신고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직접 신고도 가능

● 각급 선관위의 조치

신고 접수 즉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사건 보고하고,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사건 처리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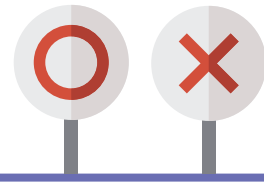
- ① 직접 또는 사건을 보고한 각급 선관위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케 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재 종류 중 하나의 제재 여부 등 결정. 단, 제재 결정 기한은 중앙선관위 의결로 연장될 수 있음. 중앙선관위 의결은 9명 이상 참석의 과반 의결로 정해짐.
- ※ 위 공표 시간이 부족할 경우와 금지사항 ②, ③, ④ 위반의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선거인(전체 또는 특정지역 또는 해당투표구)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이를 알림.
- ②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위 제재 결정 및 공표와는 별도로 해당 사안을 민주노총 규약규정 상의 징계사유로 상정하여 선거 종료 뒤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이 중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규율위원회에 제소함. 단, 금지사항 ②, ③, ④ 위반의 경우 제재 결정 즉시 규율위원회에 제소함.

| 동시선거하는 조직 적용 특례 |

* 민주노총지역본부, 민주노총지역지부, 산별노조(연맹), 단위조직(단위노조)

- (1) 동시선거를 진행할(하는) 민주노총지역본부 · 민주노총지역지부 · 산별노조(연맹) · 단위조직(단위노조) 선거의 후보자는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는 있음.
- (2) 단, 민주노총지역본부 · 민주노총지역지부 · 산별노조(연맹) · 단위조직(단위노조)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되며, 이 경우 해당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특정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는 규정위반의 선거운동으로 제재대상이 됨.
- (3) 또한, 민주노총지역본부 · 민주노총지역지부 · 산별노조(연맹) · 단위조직(단위노조) 선거의 후보자는 본인의 현직사퇴 · 직무정지 · 현직유지 등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선거운동 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의 선거운동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로 보는 선거운동



|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



“괜찮아요”

-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이 어깨띠, 모자와 옷 기타 소품을 착용·소지·사용하여 후보자 홍보
- 직접 후보자의 이름으로 노조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나 온라인 선전물 게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인쇄물을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이 배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인쇄물을 각급 단위노조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비치
- 각급 단위조직이 지정 통보한 회의·회합·행사에서 연설
- 주변 조합원들의 이메일 및 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개인홍보물 전송



“절대 안돼요”

-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는 발언
- 금품 및 향응 제공 또는 투표 또는 당선을 조건으로 노조 내 보직 제공 등 경제적 이익 약속하는 발언
- 각 단위조직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 후보자의 홍보물 기타 표시물을 상당 시간 이상 게시·비치
- 패찰을 착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중앙 및 지역본부 선관위에 사전통보(후보조 별 승합차종 3대 제한)한 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표시물로 사용하는 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모든 표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각급 조직 노조간부로부터 조합원 연락처를 제공받아 모바일 메시지를 대량전송하는 행위

| 일반 조합원(현장조직 포함) |



“괜찮아요”

- 본인 또는 현장조직의 이름을 밝혀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에 특정 후보의 정견·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 표명
- 본인 또는 현장조직의 소셜네트워크 프로필에 특



“절대 안돼요”

-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혼인여부, 성적 지향, 종교,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정 후보를 상징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함을 알 수 있는 이미지나 음향, 영상 등을 띄우는 행위

- 본인 또는 현장조직의 이름을 밝혀 주변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 및 권유하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및 SNS를 송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소개하거나 지지·반대의 의사를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하는 행위
- 사업장 내외에 적법하게 비치·게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개인홍보물 기타 표시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 산별노조(연맹) · 지역본부 · 단위조직 |



“괜찮아요”

- 각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해당 조직 명의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게시하는 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모든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을 노조기관지에 소개하는 행위
- 후보자 누구에게라도, 사업장 방문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 후보자 누구의 개인홍보물이라도 우편으로 수령한 홍보물을 특정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 행위
- 후보자 누구에게라도, 각 조직의 온라인 계정,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 사전승인을 득한 개인홍보물을 게시하도록 개방하는 행위
- 후보자 누구에게라도, 사전 보고 하에 각급 회의 및 회의 시 연설을 허하는 행위
- 중앙선거관위원회에 요청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의 질의를 하고, 중앙선거관위로부터 승인받은 답변서를 조합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



“절대 안돼요”

- 조직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의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조직 명의로 특정 후보의 정견·정책에 대한 소개 및 평가를 제시하는 행위
- 노조가 관리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공간에 각 후보자들의 개인홍보물의 비치를 허용하는 행위
- 조직 홈페이지에 모든 후보자들의 개인홍보물을 게재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수정·삭제·변경하여 기재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지났음에도 각급 단위조직이 지정한 장소에 일부 후보자의 홍보물 기타 표시물만 계속 게시·비치하는 행위

| 민주노총 소속 모든 조직의 임원과 노조 간부 |
(민주노총, 민주노총지역본부, 산별노조(연맹) 중앙 제외)



“괜찮아요”

- 직함 사용 없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 직함 사용 없이 언론기고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 직함 사용 없이 대중연설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 비공식적인 조합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정견·정책에 대한 평가나 입장을 언급하는 행위



“절대 안돼요”

- 자신의 직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 공식적인 회의·행사 등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선거운동 중 자신의 공식직함을 사용하거나 직함이 적힌 명찰을 착용한 행위
- 자신의 직함을 언급하여 주변 조합원들에게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 및 이를 권유하는 행위

| 민주노총 · 민주노총지역본부 · 산별노조(연맹)중앙 임원 · 사무처 |



“괜찮은 건 없어요”

2023 직선

유권해석 모음

| 후보자 개인홍보물 사전승인 범위 |



후보자의 개인홍보물로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매체용 선전물과 동영상 홍보물의 범위와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201029-000)〉

- 후보자가 제작하는 홍보물과 동영상의 형식을 갖추고, 단순 사실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견을 밝히거나 지지자의 지지 의사 등 의견표명이 포함된 제작물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00조에 따른 승인 대상에 해당됨
-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정을 소개하는 선전물
 - 1) 후보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 이미지만 있는 경우, 사실만 기술하는 간략한 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됨
 - 2) 다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또는 지지자의 음성이 포함되고 의견표명,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영상은 사전승인대상임
- 후보자의 공약, 슬로건, 입장서, 의견표명, 지지자들의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 이외의 의견을 표명하는 홍보물 및 동영상은 사전승인 대상임(카드뉴스/공약/슬로건을 이미지화한 것등 포함)
- 대정부 입장이나 가맹/산하/단위조직의 투쟁지지, 민주노총 각급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표명 등의 홍보물 및 동영상은 사전승인 대상임

●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에 공개되는 동영상은 사전승인이 불가함. 다만 동영상 촬영이 완료되어서 온라인에 게재될 경우 온라인 게재와 동시에 사후승인 대상임

2023년 해석 변경 :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에 공개되는 동영상(온라인 스트리밍 영상)은 개인홍보물이 아니며, 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유세 등)과 동일하게 취급함. 선거운동 위반에대한 신고, 판단, 제재도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동일하게 취급함. 단, **스트리밍 종료 후 해당 영상을 게시·배포하는 경우 개인홍보물에 해당하며 사전 승인 대상임.**

| 온라인 단체소통방에서의 선거운동 여부 |

질의 가맹조직과 그 산하조직의 공식적인 온라인 메신저의 단체소통방 등에 후보자가 개인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201105-000)〉

- 각급 단위 조직과 그 산하기구에서 개설한 소셜미디어(SNS) 계정,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노조 기관지/선전물 등에 특정 후보자의 개인홍보물 등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 및 균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함. 이는 온라인 메신저의 단체소통방 명칭에 각급 조직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조직의 사업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설된 모든 온라인 회의공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민주노총 각급 산하조직 등이 해당 조직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회의공간에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조직의 판단에 따름. 다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 및 균등한 대우를 보장’ 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직이 게재 기준을 정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출받은 후 일정한 범위의 온라인 공간 또는 게시판에 모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직의 조합원이나 선거운동원, 지지자 등이 임의로 게재하는 것은 금함.

| 선거권 없는 조합원의 선거운동 범위 |

질의 선거권이 없는 단위조직의 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 그렇지 않다면 선거권 없는 단위조직의 명의를 명기하지 않고 조합원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201118-000)〉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원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민주노총 임원선거 및 지역본부 임원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은 가맹조직의 맹비 납부 여부인 반면 선거운동의 기준은 조합원 여부로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민주노총의 규약 및 상벌규정 상 조합원의 조합비 미납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 점, 소속 조직이 맹비를 미납하였더라도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다면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아니라거나 조합원으로서 일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원 아닌 자’로 해석할 수는 없음
- 선거권 없는 조합원의 선거운동 범위
 - 맹비 미납으로 단위조직의 선거권이 인정되지 못한 결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합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 의미에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볼 것은 아님

- 다만,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권 없는 자들에 의해 선거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우려도 부인할 수 없는바, 개인적인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이외에 특정 선본의 개인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할 것을 권고함. 특히 해당 조합원이 선거권이 제한된 소속조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선거권 있는 단위조직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바,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때 소속조직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도록 권고함.

| 특정 노동조합의 대표 후보라는 표현 |

- 질의** 지역본부 결선에서 후보조의 개인홍보물에 '00노동조합 대표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지역본부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배포된 홍보물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시 조치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201214-000)>

-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대표, 여성노동 대표, 청년노동 대표 등 노동운동에 대한 대표를 자임하는 것은 해당 후보조의 공약과 정책적 방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특정 노동조합의 소식임을 이유로 '00노동조합 대표후보'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해당 노조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0조 각급 노동조합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음
- 후보가 특정 노동조합을 지칭하여 대표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개인홍보물은 각급 노동조합의 중립의무에 비추어 볼 때,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홍보물에 해당하느바, 이의 배포·게시 등을 중단하도록 하고 문제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였던 것으로, 해당 개인홍보물이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규정위반의 선거운동으로 제재결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정정문자를 발송할지 등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지역본부 선관위가 판단하여 처리하면 족함. 이때 추후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문자 발송 등은 관련 후보조 명의를 아닌 지역본부 선관위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각급 조직에서 투표 독려나 투표 참여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행위가 결합되는 등 분쟁이 지속되는바, 허용되는 투표 독려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201218-000)〉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7조상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바,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그 자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표기간 중 누구든지 투표 독려는 가능함
- 하지만 투표 독려활동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지지를 권유하는 언행이 결합되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바, 규정 제41조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0조의 중립의무 있는 각급 단위조직, 각급 단위조직 등에서의 공식직함을 가진 자가 그 명의로 투표 독려를 기회로 한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 및 그러한 권유를 하는 것은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해당함. 모든 이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투표 기간에는 누구든지 투표 독려를 기회로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 및 그러한 권유를 할 수 없음
- 한편 투표 독려를 이유로 한 경품행사는 특정 선본이나 각급 조직 및 개인 조합원이 투표 독려를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결합되거나 그렇게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2017 직선

유권해석 모음

| 선거운동 유무 |

질의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민주노총의 사업을 홍보하고자 개인홍보물에 민주노총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 1577-2260 상담전화번호를 포스터와 선거운동복 등에 기입해도 무방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3-002)>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공정경쟁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단독후보가 민주노총을 알리고 노조가입·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무방함.

질의 특정 후보선본 명의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해당 서명운동에 대해 선전물로 홍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5-001)>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하나로 서명운동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와 서명운동의 내용에 대한 지지의사가 동일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서명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함.
- 특히 서명을 위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서명한 명단을 인쇄물 형태의 선거홍보물에 사용하면 규정 제44조 위반에 해당되며, 온라인 선거홍보물이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제48조의 임의로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서명 명부란에 서명자가 노동조합의 현 직책을 명기하면, 직함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로 선거규정 제40조 4항 위반이 될 수 있음.
- 한편 서명운동의 내용이 이른바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과 같은 경우라면, 서명요청 문서상 언급된 내용에 따라서는 선거규정 제50조의 비방,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질의 지역본부의 특정 후보자가 해당 지역본부의 지구협의회 의장(현 지역지부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단위노조 산하기구 출범식 및 총회에 지구협의회 의장 명의로 축하화분을 보내는 행위가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5-002)〉

-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4조 3항에 따른 직무정지 대상은 아니므로,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는 해당 직책에 따른 통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축하화분을 보내는 행위는 통상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축하화분에 후보자의 이름을 명기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원의 패찰을 착용·소지·사용하지 않은 선거운동으로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후보자는 신속히 관련 물품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으나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코자 구두 경고함.

2023년 추가 해석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후보자라 하더라도 현직 임원·간부인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4항,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직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직무 수행 중 후보자임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함.

질의 조항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28-002)〉

- 일반 조항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아래와 같음.
 - ① 선거 진행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 ② 각 후보의 정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③ 본인의 이름을 밝혀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에 특정 후보의 정견,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견을 표명, ④ 본인의 소셜네트워크 프로필에 특정 후보를 상징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함을 알 수 있는 이미지나 음향, 영상 등을 띄우는 행위, ⑤ 본인의 이름을 밝혀 주변 조항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반대 및 권유하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⑥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 일반 조항원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아래와 같음.
 - ①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②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혼인여부, 성적 지향, 종교,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③ 특정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④ 특정 후보자의 정견, 정책을 소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를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하는 행위, ⑤ 사업장 내외에 적법하게 비치,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개인홍보물 기타 표시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 |

- 질의 **선본간 정책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하는 경우**
3팀의 후보선본이 출마하여 그 중 2팀의 선본이 연합하여 기초를 같이 하는 정책에 대해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1-001)〉

- 정책의 내용상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으로서 문제의 소지 없음.



질의 단일후보 시 특정노조의 기자회견에 후보가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8-001)〉

- 규정 40조 2항 2호는 각급 단위조직 관리하에 행하는 회의 및 회합에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일 후보인 경우에 특정노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40조 3항, 4항은 각급 단위조직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기자회견 참석케 할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함.

|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질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 1) 핸드마이크 사용하여 후보 선본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 2) 차량 스피커를 사용하여 후보 선본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 3)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후보 선본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 4)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노래를 틀 수 있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09-001)〉

1.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2항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중 4호의 마이크·확성기 등을 이용한 연설행위를 정하고 있는 바, 마이크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할 것임.
2.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후보자 개인 홍보물 이외에는 후보자가 임의로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게시할 수 없고,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이 착용·소지하는 표시물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홍보목적으로 차량 자체를 각종 선전용 표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전용 표시물 없이 차량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2023년 추가 해석 : 2020년 상반기 규정개정으로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의 홍보물 중 7호의 홍보용 차량 및 차량부착 인쇄물을 허용하게 되었으므로, 중앙선관위 사전승인을 득한 선전용 표시물의 차량 부착도 허용함



질의 일반조합원들이 지역본부선거의 특정 후보에 대해 노조직책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 위한 피켓팅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4-001)〉

-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4조상 가맹조직 중앙 임원, 위원회장, 산하조직 임원 및 위원회장은 직무정지되고, 후보자의 사퇴는 본인의 자유일 뿐 사퇴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후보자 등록상의 규정위반 문제는 없음.
- 후보자의 사퇴요구가 선거와 별개로 기존 지역활동에 대한 반대의견표명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지역본부규정 제27조상 특정후보의 비방,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후보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의사표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대상이나 피켓을 사용할 경우 지역본부규정 제20조 제2항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임

| 개인홍보물 |



질의 이미 승인한 개인홍보물 폐기·수정 후 재신청

11월 15일(수) 16:00 A3 규격 개인홍보물 2차분의 시안을 선관위에 접수, 같은 날 21:00 선관위 승인 받음. 11월 18일(토) 18:00 수요일 승인했던 개인홍보물 시안을 폐기하고 수정하여 다시 검토신청 하겠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재검토가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8-002)〉

-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4조와 선거관리규칙 제27조는 A3는 2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등록 승인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재등록 승인이 사실상 2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즉 재등록 승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음
 - 1) 폐기 시안과 새로 승인을 얻으려는 개인홍보물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경우
 - 2) 내용이 다르더라도 폐기할 홍보물이 승인된 직후에 재등록을 신청한 경우, 즉 폐기할 홍보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유세 및 합동연설회 |



질의 전노대 집회에서 전국선거운동원 30명, 서울지역 선거운동원 30명, 총 60명이 선거운동원 패찰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한지 여부

질의 선거운동원이 아닌 단순 지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쳐도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07-002)〉

1.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제3항 4호에 의거, 합동유세, 합동토론회 등 동시에 한 장소에 운집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수는 4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2. 선거규정 제37조와 같이 일반조합원은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반대의 의사표명이 가능하나,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금지됨. 따라서 선거운동원 패찰을 착용하지 않은 단순 지지자들은 후보자의 개인홍보물 배포 기타 표시물(운동원복, 피켓, 현수막 등)을 착용·소지·사용하지 못함.
또한 선거운동원과 함께 도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선거운동원과 일체처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경우,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패찰을 착용하지 않은 자의 경우 규정위반에 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도열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운동원의 구호를 따라 외치거나 동조하는 지지 의사표시는 가능함.

| 임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

질의 특정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에 각 단위조직의 전현직 임원의 지지글을 게재하는 경우, 현직 직책을 표기하지 않고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6-001)〉

- 선거관리규정 제40조 4항에 따라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현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 이외에 해당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임원이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명등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의견표명은 허용됨.

질의 현직 본부장이 차기 본부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7년 민주노총 **본부장'이란 자기소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28-001)〉

- 지역본부 동시선거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민주노총 산하조직 임원은 후보자 확정공고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므로 '경기본부장의 사무'로서 해당 직함을 밝히는 것은 금지됨. 해당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나, 후보자 경력사항의 하나로 단순 현직을 기재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현직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직무 정지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부장으로서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정견을 피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부장으로서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정견을 피
력하는 경우에는 현직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부장의 지위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
으므로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질의 과거 당해 지역본부 선거세칙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사무처 성원을 규정했으나 현 규정상 운영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07-001)〉

-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의 상위규정으로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지역본부 임
원과 각종 위원회의 장, 사무처 성원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임. 다만 지역본부 운영위원인 가맹조직 노
동조합의 지역 또는 단위사업장 대표자는 자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규정 제40조 제4항
에 의거 공식직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질의 특정 선본의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운동원을 단위노조 선관위에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규정위반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

-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하는 바,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를 위한 사무집행 책임이 있는 자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규범 내재적
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보기 어려움.
- 또한 선거관리위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 제40조의 각급단위 중립의무에는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선거
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특정선본의 선거운동원인 자를 선거관리위원으
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임.
- 특히 특정선본의 선거운동원인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직
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본에서 선거운동원이었던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개인홍보
물 등 선거운동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공정선거를 의심케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선거관리위
원이 특정선본의 선거운동을 계속한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예외적으로 단위노조 현장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에도 선거관리위
원 등의 선임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선거운동원인 단위노조 조합원을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
할 경우(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보다 상급인 가맹조직 및 산하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선임
은 예외에 해당될 수 없음), 선거관리위원 선임 전에 관할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등 지도를 받
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선임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
도, 해당 선본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을 당시의 사진 또는 영상 등이 선
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임.

|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의 중립의무** |

질의 단일후보 시 특정노조의 기자회견에 후보가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8-001)〉

- 규정 40조 2항 2호는 각급 단위조직 관리하에 행하는 회의 및 회합에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일 후보인 경우에 특정노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40조 3항, 4항은 각급 단위조직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기자회견 참석케 할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함.

질의 공식적인 가맹조직의 산하 회의체에서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예) 공공운수노조 산하 회의기구에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대해 '00000에 적극적인 후보의 지지'를 결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3-003)〉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3항에서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가맹조직 및 그에 소속된 노조, 지부, 지회 등 각급 단위조직과 각 조직의 위원회, 부설기관 등 각 산하기구)가 그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바,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을 결의하는 행위는 사실상 회의록 등 공식적인 문서로 결의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므로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00000에 적극적인 후보 지지"라고 하는 위 내용만으로는 실제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나 반대에 이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인 후보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질의 특정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질의 개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6-002)〉

1.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선거규정 제

40조 3항 위반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됨.

2.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인쇄물 형태를 제외하면 온라인을 활용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의견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임. 다만 해당 조합원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유출한 선거운동으로서 선거규정 제4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질의 ▶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 등이 임의로 각 후보선본에게 정견 또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13-001)〉

-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5조 3항, 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따라 각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39호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로부터 질의에 대해 승인요청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각 선본에 질의할 것이며, 각 선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답변을 제출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
- 따라서 각 선본은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공개답변해서는 안되며,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가 임의로 공개질의한 게시 내용은 삭제해야 함.

질의 ▶ **각급 단위조직 현직 지도위원의 직함을 사용한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41120-001)〉

- 민주노총 규약 제47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되고, 민주노총 소속 각급 단위조직의 지도위원 또한 해당 조직의 규약·규정에 따라 위촉·인준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도위원’이라는 직함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4항에서 정한 ‘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의 공식직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각급 단위조직 현직 지도위원의 직함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금지된다.**

| 가맹·산하·단위조직 후보자의 선거운동 |



질의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가맹조직선거의 후보자가 민주노총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09-002)〉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당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됨.
- 또한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의 선거운동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2023년 추가 해석 : 동시선거를 치르는 산별노조(연맹)·민주노총지역본부·민주노총지역지부·단위조직 임원 후보자는 소속 조직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본인의 현직사퇴·직무정지·현직유지 등에 따라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의 선거운동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거운동 금지사항과 제재 |



질의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번 선대본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내용상 허위사실을 인정한 점과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여부



질의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호하게 선관위의 입장서를 게재하는 것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후속조치를 방기한 것에 대한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41127-002)〉

- “**지역본부 2번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7~8년 전만 해도 **지역본부는 사실상 ‘사고 지역본부’ 였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지역본부의 집행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사고 지역본부” 라 기재하였으므로 평가의 견해일 뿐 허위사실 등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임. 가사 위 표현이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등에 해당하지 않은 점, 선거관리규정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치방법이나 처리절차를 따

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여 **지역본부 선관위가 ‘입장서’ 를 통해 ‘해당 시기의 **본부는 사고본부가 아니었음’ 을 확인하였는바, **지역본부 선관위가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제재 등을 하는 것은 규정을 벗어난 월권에 해당할 수 있음

|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

질의 개인이 명의 없는 투표 독려 피켓을 만들어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독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소속 조합원이 아닌 자가 타노조 또는 타산별 투표소에 가서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26-001)>

- 피켓의 내용이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상의 ‘선거운동’ 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 되지 않음.

질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기간에 지부에서 식권을 선거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선거관리규정 상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29-001)>

- 투표 그 자체를 독려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37조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위노조 선관위가 투표 기간 중 투표 독려 행위 및 투표하러 온 조합원에게 식권교부도 가능함.
- 다만 특정 선분에 대한 지지 등을 표명하거나 표명할 수 있는 일반조합원이나 선분/선거운동원인 자가 투표 독려 명목으로 식권을 교부 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금지함.
- 선거관리규정 제50조의 금품제공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주의를 요함. 식권 교부 주체와 관련 캠페인 담당자, 독려 조치의 방법을 사전에 지역본부 선관위가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정

질의 투표기간 중 후보자의 투표독려행위와 단위조직 방문이 규정위반인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130-001)>

- 투표기간 중 후보자의 투표참여독려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봄.
- 후보자의 단순 지인방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곧바로 금지된다 할 것은 아니나 투표참여독려 목적으로 현장순회를 한다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하여 조직적인 방문은 선거운동으로 착오할 수 있고 은

밀한 선거운동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선거운동원복장 등 표시물 일체 착용, 사용해서는 안 됨.
- 특정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수있는 언행은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해당됨.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투표 기간 중 발생한 투쟁 현안에 대해 선거운동본부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204-001)〉

-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투표 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선본의 명칭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될 것임.
- 후보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안사업에 결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예외적으로 현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라 모든 후보자 및 선본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정선거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임.



투표 기간 중 선본에서 낸 성명서는 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인지,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171204-002)〉

-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투표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선본의 명칭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특정한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뿐 아니라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제기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으로서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위반(지역본부 동시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준용규정)에 해당될 것임.
- 특히 당해사안의 경우 명확히 확인된 사실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선본이 ... 심각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해당 선본 이외의 다른 선본들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본부 동시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5항의 비방, 중상모략,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 해당 지역본부선관위는 지역본부 동시선거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관련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 있음.

투표가 곧 투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20만의 선택

